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22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박정현 · 서미화 · 임미애

이해식 • 박균택 • 허 영

이연희 · 김재원 · 강준현

황정아 · 복기왕 · 김 윤

이기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 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 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판매대금(통신판매중개자등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1항제 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

다.

-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해당 판매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의 청구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 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우선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등은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판매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①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판매대금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 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연체이 자율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 판매마감일"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 본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 제9조"를 "제8조, 제8조의2, 제9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 도록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금의 보호 및 통신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 8조의2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등 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① 사
	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통신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
	는 판매대금(통신판매중개자등
	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
	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
	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
	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
	<u>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u>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
	<u>야 한다.</u>
	<u>1. 신탁</u>
	<u>2. 예치</u>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별도관 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 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 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경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합병 또 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

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 하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판매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말소된 경우
-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 8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 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 판매중개자등은 관리기관이 제 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판매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 당 판매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 보
- 2.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 사한 정보로서 판매자의 청구 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①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그 청구권의 양 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 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 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판매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 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 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 리의 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 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판 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연체이자율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판매마감일"은 "소비자가 해당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본다.

1
제8조, 제8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34조(과징금) ① • 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의2,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이 경우 제20조제4항 및 제5</u>
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
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규모유
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보고하는 고지그 그애과 도

	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
	<u>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